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

- 주 제 :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 일 시 : 2014. 6. 26. (목) 14:00~16:30
- 장 소 : The-K서울호텔 본관 3층 거문고A홀
-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

- 일시 : 2014. 6. 26.(목) 14:00~16:30
- 장소 : The-K서울호텔 본관 3층 거문고A홀

개 요

- 주제 :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 일시 : 2014년 6월 26일(목) 14:00~16:30
- 장소 : The-K 서울호텔 본관 3층 거문고 A홀

□ 진행순서

- | | |
|-------------|--|
| 14:00~14:10 | 개회사 |
| ▶ 개회사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 14:10~16:20 |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
| ▶ 사회자 | 이준규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 발표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
| ▶ 토론자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김완일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신승표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전병득 매일경제 논설위원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조병선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최영록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제정책관
(가나다 순) |
| 16:20~16:30 |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 16:30 | 폐회 |

목 차

I. 서론	1
II. 가업승계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4
1.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찬반론	4
가. 찬성론	4
나. 반대론	4
2. 현행 가업승계 세제 평가 및 개선방안	5
가. 개관	5
나. 가업상속공제 평가 및 개선방안	8
3. 사전증여 특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20
가. 현행제도	20
나. 평가 및 개선방안	21
III. 중장기 상속·증여세제 운용 방향	24
1. 현황 및 평가	24
2.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28
3. 중장기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29
가. 상속·증여세율	29
나. 공제제도	32
참고문헌	37

표 목 차

<표 II-1>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개정 연혁	6
<표 II-2> 가업상속공제 실적	7
<표 II-3> 사전증여 특례 실적	7
<표 II-4>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 개관	8
<표 II-5> 가업상속공제제도 '13년 개정내용	9
<표 II-6> 주요국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11
<표 II-7> 우리나라 매출액 규모별 중견기업 수	13
<표 II-8> 주요국의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수준	14
<표 II-9>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16
<표 II-10> 외국의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17
<표 II-11>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18
<표 II-12> 외국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19
<표 II-13> 우리나라의 사전증여 특례제도	21
<표 III-1>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체계	24
<표 III-2>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세수비중	25
<표 III-3> 상속세 과세자 비율	25
<표 III-4> 증여세 과세자 비율	26
<표 III-5>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세율	26
<표 III-6> OECD 국가별 상속·증여세 세수 현황(11년 기준)	27
<표 III-7> 주요국의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29

<표 III-8> OECD 34개국 + 7개국의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31
<표 III-9> 우리나라의 상속공제제도	32
<표 III-10> 우리나라의 증여공제제도	33
<표 III-11> 주요국의 상속공제제도	34
<표 III-12> 주요국의 증여공제제도	35

I. 서론

- 그간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창업세대 CEO들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기업을 통해 쌓아온 경영 노하우나 기술력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임
 - 특히, 가업승계시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 등으로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특례제도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KDI, %): ('11~'20) 3.8 ('21~'30) 2.9 ('31~'40) 1.9
- 이에 정부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사전상속에 대한 저율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납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가업용 재산의 승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으며,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부자에 대한 감세라는 비난도 있어 현행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 일부에서는 기업승계에 한정된 세금 혜택보다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속세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50%)으로 개방경제에서 국부의 해외 유출 및 세대간 원활한 부의 이전 저해로 경제 활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
 - 캐나다('72), 호주('77), 뉴질랜드('92), 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04), 스웨덴('05)은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 대만은 10단계 누진세율(최고 50%) 과세체계를 '10년 이후 단일세율(10%)로 전환

- 또한, 한편으로는 최근 부의 재분배 및 소득불균형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상속·증여세제 강화를 통해 향후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향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득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는바, 부의 분배수단으로서 상속·증여세 제도를 주요 정책으로 활용하려는 경향
 - Thomas Piketty(파리경제대학)는 부의 재분배 및 소득불균형에 대해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 (소득불균형 현황) '70년대 이후 미국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점차 증가(30%대→ 50% 내외)하는 등 소득불균형 심화
 - 소득불균형을 노동소득 요인과 자본소득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 (소득불균형 원인 및 향후전망) 높은 자본수익률 및 자본집중도, 자본세율 등으로 인해 향후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

- (소득불균형 해소방안) 누진소득세, 글로벌 총자산세 등을 통해 과도한 자본소득 등으로부터 비롯된 소득불평등 완화 가능

□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도 있음

- 富의 집중 완화(재분배)가 왜 우선되어야만 하는지를 충분한 설명 없이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을 상실
- 재분배가 초래하는 비용 및 상쇄효과 우려를 거의 인정치 않고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데에만 집중
 - 소득과 富에 대한 높은 세금부과가 기업가정신 제고와 리스크 부담을 억제하여 성장을 취약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상속세를 포함한 일부 자본과세가 재분배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사회 모두의 번영을 보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음

⇒ (논의방향) 부의 분산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업승계제도 및 상속·증여세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Ⅱ. 가업승계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1.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찬반론

가. 찬성론

-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로 가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 미침¹⁾
- 가족간에만 전수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know-how)가 계속 전승되도록 지원할 필요²⁾
-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가 가족간에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가족간에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반대론

- 경영권이 가족에 한정되는 경우 유능한 외부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게 됨
- 덴마크,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의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족이나 자식이 경영하는 사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옴
-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비용절감보다 경영능력 저하로 인한

1) Astrachan and Tutterow 1996; Brunetti 2006; Harris 1949; Holtz-Eakin, Phillips and Rosen 2001

2) Bennedsen, Nielsen, Pérez-González and Wolfenzon 2007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³⁾

-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납세자나 과세당국 모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 유동성 문제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장기간 연부연납으로 충분⁴⁾

2. 현행 가업승계 세제 평가 및 개선방안

가. 개관

- 가업승계 세제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매출 3,000억원 미만)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를 공제
 - (사전증여 특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사전증여받은 경우 10% 증여세를 적용(30억원 한도, 5억원 공제) 후 상속시 정산('08년 도입)
- (그간의 지원 내용) '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 기업 및 공제율·공제한도를 대폭 확대, 사전증여는 '08년 도입 이후 유지
 - (적용대상) ('07) 매출액 1천억원이하 중소기업 → ('14) 3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 (공제율) ('08) 20% → ('09) 40% → ('12) 70% → ('14) 100%
 - (공제한도) ('07) 1억원 → ('08) 30억원 → ('09) 100억원 → ('12) 300억원 → ('14) 500억원
- 또한,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완화

3) Grossmann and Strulik, 2010

4) Maiterth, Niemann, Blaufus, Kiesewetter, Knirsch, König, Hundsdorfer, Müller, Sureth, and Treisch 2006; Bach, Broekelschen, and Maiterth 2006: 1967; Hey 2007: 573; Sachverständigenrat 2008: 366)

- 피상속인의 대표재직 요건 완화(가업 기간 중 60%→50% 등), 동일업종 유지기준 완화(세세분류 내 변경 → 세분류 내 변경) 등

<표 II -1>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개정 연혁

구분	'07년 이전	'08년 이후	'09년 이후	'11년 이후	'12년 이후	'13년 이후	'14년 이후
요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할 것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영위할 것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할 것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대표이사 취임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좌 동>	<좌 동>	<좌 동>	-상속인의 배우자가 취임한 경우도 포함
	-중소기업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매출액 1,500 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	<좌 동>	-매출액 2,000 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	-매출액 3,000 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공제 금액	-1억원	-(공제율) 기업재산의 20%	-(공제율) 기업재산의 40%	<좌 동>	-(공제율) 기업재산의 70%	<좌 동>	-(공제율) 기업재산의 100%
		-(공제한도) 30억원	-(공제한도) 60억~100억원	<좌 동>	-(공제한도) 100억~300억원	<좌 동>	-(공제한도) 200억~500억원

○ 가업상속공제는 연간 50건, 사전증여 특례는 연간 100여건 수준

<표 II -2> 가업상속공제 실적

(단위: 억원)

연도	합계		
	건수	공제금액	건당
2008년	51	40	0.8
2009년	43	98	2.3
2010년	54	386	7.1
2011년	46	325	7.1
2012년	58	343	5.9
(합계)	252	1,192	4.7
(평균)	50	238	

<표 II -3> 사전증여 특례 실적

(단위: 억원)

연도	합계		
	건수	증여 재산가액	건당
2008년	5	104	20.8
2009년	23	308	13.4
2010년	127	1,940	15.3
2011년	234	3,698	15.8
2012년	151	2,346	15.5
(합계)	540	8,396	15.5
(평균)	108	1,679	

나. 가업상속공제 평가 및 개선방안

1) 현행제도

〈표 II -4〉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 개관

구 분	구체적 요건
가업상속대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금액	○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 200억~500억원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200억원 15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500억원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 이상 주식 보유
상속인 요건	○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인이 해당 가업을 모두 상속 *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는 부분은 제외 ○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	○ 상속 후 10년간 가업을 영위할 것 * 대표이사에 종사, 주된 업종 유지,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 5년 이내 10%) 이상 처분 금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

<표 II -5> 기업상속공제제도 '13년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 (가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 (현행 유지)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및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70% ○ (한도) 가업기간별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100억원 - 15년 이상: 150억원 - 20년 이상: 3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200억원 - 15년 이상: 300억원 - 20년 이상: 500억원
<input type="checkbox"/> 피상속인 대표재직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업기간 중 60%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업기간 중 50% 이상 ② 상속개시일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③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후 상속인 승계
<input type="checkbox"/> 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 종사 - (예외) 천재지변,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 로 피상속인 사망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input type="checkbox"/> 상속인 요건(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 그 상속인의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 가업종사가 어려운 예외 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 · 상속인의 병역의무, 질병요양, 학업 등 - (현행 유지)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처분 가능 범위 - (원칙) 5년 이내 10% <li style="padding-left: 40px;">10년 이내 20% - (예외) 수용·협의매수, 조직변경, 대체 취득, 사업장 이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비율 유지 - (원칙) 계속 유지 - (예외)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유상증자시 특수관계 없는 자의 주식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 예외사유 추가(승) - 기업공개 등 지분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유지 기준 - 세세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분류(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유지 - 사후관리 기간(10년) 중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유지(승) - 사후관리 기간(10년) 중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 - (중소) 10년간 100% 이상 <li style="padding-left: 20px;">(중견) 10년간 12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 매년 80% 이상 고용유지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위반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기간 중 요건 위반시 공제받은 전액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이상 사후관리 요건 충족시 추정액 차등

2) 적용 대상

- (현황)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
 - 다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영농, 양축, 영어, 영림업종은 적용 제외
 - '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
 - (적용대상) ('07) 매출액 1천억원이하 중소기업 → ('14)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 (외국과의 비교) 독일·영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나 대상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으며, 일본은 비상장중소기업으로 한정
 - (독일) 사업용 자산이 전체 자산의 90%(50%) 이상인 기업만 공제
 - (영국) 전문직 또는 천직에 해당하는 가업

〈표 II -6〉 주요국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구 분	한국	독일	일본	영국
규모 제한 등	-중소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규모 제한은 없으나 사업용 자산이 전체 자산의 90%(50%)이 상인 기업만 공제	- 비상장 중소기업	-규모 제한은 없으나 전문직 또는 천직에 해당하는 가업

- (평가) 주요국의 경우 가업상속 적용 대상 규모를 차별하지는 않음
 - 특히 매출액 규모로 적용 여부를 제한할 경우 인위적 기업 분할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제한 기준이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들의 현실적인 성장한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 존재
 - 다만, 적용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일본과 달리 일반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한국) 과세표준 구간이 5단계 10~50%
 - (독일) 과세표준 구간이 7단계 7~30%(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개선방안) 다음과 같은 방안 제시 가능
 - (1안) 가업상속공제는 장수기업 육성, 기술·경영 노하우 이전, 일자리 유지 등 국가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도입된 만큼 수혜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필요
 - (2안) '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시행성과 등에 대한 평가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대상에서 제외되는 3천억원 초과 중견기업은 525개로 전체 중견기업 중 21%에 불과
 - 다만, 영농상속공제 업종과의 중복 배제 등으로 영농 업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은 개선할 필요

〈표 II -7〉 우리나라 매출액 규모별 중견기업 수

구분 \ 매출	1천억 미만	1천억~2천억원	2천억~3천억원	3천억~5천억원	5천억~1조원	1조원 이상	합 계
기업 수 (개)	1,093 (43.6%)	520 (20.8%)	367 (14.6%)	276 (11.0%)	172 (6.9%)	77 (3.1%)	2,505 (100.0%)

자료: 중기청, 2013년 중견기업 현황 발표(12년말 기준)

- (3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행 유지하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연부연납특례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하여 상속세 납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도 검토 가능
 - (현행) 일반 연부연납 5년
 -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3년 이후 12년 연부연납(50% 미만인 경우 2년 이후 5년 연부연납)

3) 공제 수준

□ (현황)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는 업력에 따라 200억원~500억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08년 이후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

- (공제율) ('08) 20% → ('09) 40% → ('12) 70% → ('14) 100%

- (공제한도) ('07) 1억원 → ('08) 30억원 → ('09) 100억원 → ('12) 300억원 → ('14) 500억원

□ (외국과의 비교) 독일 등 주요국은 공제한도는 두고 있지 않으나, 공제대상 · 공제율은 모두 달리 운용

<표 II -8> 주요국의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수준

구 분	한국	독일	일본	영국
공제 금액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 가액	<공제금액> -비사업용자산이 10% (50%)이하인 경우에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85%) 공제	<공제금액> -비상장주식: 주식 과세가액의 80% 납세유예	<공제금액> -100% 공제 · 지배기업의 유가증권 · 경영권이 있는 비 상장회사 주식
	<한도> -500억원 * 경영기간에 따라 차등 · 10년: 100억원 · 15년: 300억원 · 20년: 500억원		<한도> -발행주식 2/3	-50% 공제 · 상장회사 주식 · 사업용 토지 · 건물 기계 설비

- (평가) 공제 대상 및 대상별 공제율 등 각 나라별로 운용 방법이 달라 절대 비교는 어려우나,
 - 현행 가업상속공제 혜택(공제율 100%, 최대 500억원)은 적지 않은 수준
 -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공제가 아닌 상속세액 80% 납세유예

- (개선방안) 다음과 같은 방안 제시 가능
 - (1안)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속공제 한도 폐지 또는 추가 확대할 필요
 -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특히 제조업)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취지인 지속경영과 원활한 가업승계 취지에 반하는 결과
 -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추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이월과세를 도입함으로써 부(富)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도 고려할 필요
 - (2안)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최근 공제수준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당분간 시행성과를 지켜볼 필요
 - 독일의 경우에도 최근('09년)부터 비로소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확대(35% 공제→85%·100% 공제)된 것으로 가업승계 세제지원으로 독일의 우량장수기업이 발전한 것이 아님
 - 독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매우 장기간 존속하므로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을 제한할 필요성이 낮음
 - 250인 이하 중소기업 비중 99.4%, 평균 존속기간 85년 내외
 - 또한, 현행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현재 위헌법률심사가 제청된 상태

4) 사전요건

- (현황)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50%(상장기업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함
 -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받아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표 II -9>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구 분	구체적 요건
피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할 경우 ①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기간 ②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기간 ③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 까지 계속 재직할 경우에 한정) ○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 이상 주식 보유
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인이 해당 가업을 모두 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는 부분은 제외 ○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외국과의 비교) 일본의 경우 지분보유, 사업활동 요건 등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

<표 II -10> 외국의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구 분	구체적 요건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이상 지분 보유 · 비사업용 자산이 50%(또는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사업 운영: 전문직 또는 천직에 의해 운영하는 사업 · 중요사업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 직전 2년간 보유할 것
일본	<p><피상속인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계회사의 대표이면서, ·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 · 선대 경영자가 후대 경영자를 제외하고 최대 주주이어야 함 <p><상속인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대 경영자의 친족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 회사 대표 취임 · 후대 경영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 · 후대 경영자는 특수관계인 그룹 내에서 최대주주이어야 함

(평가) 각 나라별로 적용 요건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미국, 일본의 경우 지분요건, 사전 경영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다음과 같은 방안 제시 가능

- (1안) 독일과 같이 피상속인 요건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고 사업 및 고용의 계속성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통해 관리할 필요
- 현행 요건으로는 업력 10년 미만 사업체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2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을 받아야 하는 등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작용

- (2안)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상속세 제도의 실효성 저하, 다른 상속재산과의 과세불형평 심화, 조세회피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 다만,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은 지속해 나갈 필요
 - (예)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할 경우 2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여러 상속 인간 형평성 문제 발생 등

5) 사후관리 요건

- (현황) 상속 후 10년간 가업 영위, 지분요건 및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반 기간에 따라 추징률 차등 경감
 - 정부는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지난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였음
 - 1인이 전부 승계 →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 인정
 - 업종변경 금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내 업종변경 인정
 - 사후관리 위반시 전액추징 → 위반기간에 따라 경감률 적용 등

〈표 II -11〉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
- 상속 후 10년간 가업을 영위할 것
 - 대표이사에 종사, 주된 업종(소분류) 유지,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 5년 이내 10%) 이상 처분 금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고용 유지
 - ①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 ② 전체기간으로는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
-

- (외국과의 비교) 영국은 별도의 사후관리 요건이 없으며, 독일은 고용요건을 통해 사후관리
 - 일본은 대표직 유지(5년), 고용요건(5년), 주식보유 요건(평생)을 충족하여야 함

<표 II -12> 외국의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구 분	구체적 요건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이 7년(5년) 이상 가업 유지 · 5년간 가업유지 선택시(상속재산의 85%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승계 후 5년 동안 고용 유지: 사업승계 후 5년간 급여총액이 승계연도 급여총액의 400% · 7년간 가업유지 선택시(상속재산의 100%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승계 후 7년 동안 고용 유지: 사업승계 후 7년간 급여총액이 승계연도 급여총액의 700%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사후관리 요건 없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후대 경영자가 승계회사의 대표직 계속 유지 · 5년간 상시 종업원 수의 80%를 계속 유지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

- (평가) 현행 기업상속공제는 10년간 자산, 가업, 지분, 고용 등과 관련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추징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

□ (개선방안) 다음과 같은 방안 제시 가능

- (1안) 가업상속공제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고용유지 요건 완화, 상속지분 유지 완화 등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
- (2안)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상속세 제도의 실효성 저하, 조세회피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 또한,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므로 그 성과를 먼저 지켜볼 필요
 - 동일업종 유지기준 완화(세세분류 내 변경 → 세분류 내 변경) 등

3. 사전증여 특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가. 현행제도

- (지원내용)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 적용(상속시 정산, '08년 도입)
- (적용요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 (사후관리) 10년 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들는 경우 증여세를 추정

<표 II -13> 우리나라의 사전증여 특례제도

구 분	구체적 요건
지원대상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 적용 (상속시 정산)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주식 처분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시 ①가업에 해당하고, ②수증자가 지분율 감소 없이 가업에 종사하며 대표이사로 재직시 가업상속공제 허용

나. 평가 및 개선방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미리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

□ 다만,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법 시행시 공제한도액(30억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

□ 개선방안

- (1안)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한도 적용(최대 500억원)
 - 사전증여 특례의 경우 안정적 가업승계 및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사전증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입법 취지와 동일성 원칙에 따라 한도 확대
- (2안) 한도 일부 상향(예, 50억~100억원)
 - 사전증여 과세특례는 생존자의 “선택 행위인 증여”에 대한 혜택인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사망에 따른 상속”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곤란
 - 다만, 물가상승률·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감안하여 한도를 일부 상향할 필요
- (2-1안) 경영기간별로 차등 적용(예, 20년 이상 최대 100억원)
 -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업력별 한도 차등 적용 필요
 - * (1안)~(2-1안)의 경우 초과 증액분에 대해 사전증여 특례세율도 상향 조정 검토(예: 10%→20%)
- (3안) 현행 유지
 - 지난해 세법개정시 사실상 대표자 승계를 통한 가업의 사전승계가 가능하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정하였으므로 증여특례는 현행 유지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언제든지 대표자 지위 승계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중전: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반드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토록 하였음)

Ⅲ. 중장기 상속·증여세제 운용 방향

1. 현황 및 평가

- 상속·증여세제는 '00년 상속·증여세 과세변경 이후 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개편은 없었으며,
 - '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07년 이후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제외하고는 체계상 큰 변동 없이 유지

<표 Ⅲ-1>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체계

(단위: %)

'96.12.31일 이전		'97.1.1~'99.12.31		'00.1.1 이후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 상속세					
5천만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2억 5천만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5억 5천만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5억 5천만원 초과	40	50억원 이하	40	3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 증여세					
5천만원 이하	10				
2억 5천만원 이하	20				
5억 5천만원 이하	30				
5억 5천만원 초과	40				

□ 평가

- (세부담 비교)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시 매우 높은 편
 - 총세수(지방세 포함)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1.18%로 OECD 평균 0.31%의 3.8배 수준

〈표 III-2〉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세수비중

(단위: %)

국가명	GDP 대비			총세수(지방세 포함) 대비		
	상속세	증여세	계	상속세	증여세	계
한국	0.14	0.18	0.32	0.50	0.67	1.18
일본	-	-	0.31	-	-	1.09
미국	-	-	0.09	-	-	0.39
프랑스	0.35	0.08	0.43	0.79	0.18	0.97
영국	-	-	0.19	-	-	0.54
독일	0.14	0.02	0.16	0.39	0.05	0.44
평 균			0.11			0.31

* 상속세·증여세 각각에 대한 수치가 없이 '계'만 표시된 것은 상속·증여세 별도 구분되지 않음

□ (과세 비율) 상속세 과세비율은 '12년 기준 2.2%에 불과하나, 증여세 과세 비율은 수증인 대비 46.2%가 과세 대상임

〈표 III-3〉 상속세 과세자 비율

(단위: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율(B/A)	0.8%	0.7%	0.7%	1.0%	1.5%	1.4%	2.1%	2.2%
과세인원(B)	1,816	2,221	2,603	3,997	4,340	4,457	5,722	6,202
결정인원(A)	227,004	304,215	355,789	383,001	288,503	325,045	276,972	287,095

* 세표상 결정기준

<표 III-4> 증여세 과세자 비율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율(B/A)	52.1	57.0	50.7	42.6	45.0	46.5	50.5	46.2
과세인원(B)	62,925	88,279	121,471	97,277	96,654	96,623	127,464	91,331
결정인원(A)	120,866	154,868	239,671	228,334	214,665	207,399	252,561	197,717

* 세표상 결정기준

- (세율 수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의 2배 수준인 채로 10년 넘게 동일한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표 III-5>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세율

(단위: %)

국가명	상속세율	증여세율
한국	50	50
일본	50	50
미국	40	40
프랑스	45	45
영국	40	28
독일	30	30
평균	24.6	25.2

<표 III-6> OECD 국가별 상속·증여세 세수 현황(11년 기준)

(단위: %)

국가명	GDP 대비			총세수(지방세 포함) 대비		
	상속세	증여세	계	상속세	증여세	계
한국	0.14	0.18	0.32	0.50	0.67	1.18
일본	-	-	0.31	-	-	1.09
미국	-	-	0.09	-	-	0.39
프랑스	0.35	0.08	0.43	0.79	0.18	0.97
영국	-	-	0.19	-	-	0.54
덴마크	-	-	0.26	-	-	0.54
스페인	-	-	0.21	-	-	0.63
벨기에	0.57	0.10	0.67	1.28	0.23	1.51
독일	0.14	0.02	0.16	0.39	0.05	0.44
노르웨이	-	-	0.06	-	-	0.15
터키	-	-	0.02	-	-	0.07
네덜란드	-	-	0.26	-	-	0.66
헝가리	0.02	0.00	0.02	0.05	0.01	0.06
체코	0.00	0.11	0.12	0.01	0.32	0.33
그리스	-	-	0.06	-	-	0.18
아일랜드	0.13	0.02	0.15	0.49	0.06	0.55
핀란드	0.17	0.03	0.21	0.40	0.08	0.48
이탈리아	-	-	0.03	-	-	0.08
폴란드	-	-	0.02	-	-	0.06
룩셈부르크	-	-	0.10	-	-	0.28
아이슬랜드	0.08	-	0.08	0.22	-	0.22
슬로베니아	-	-	0.03	-	-	0.07
칠레	-	-	0.03	-	-	0.12
호주	-	-	-	-	-	-
오스트리아	-	-	-	-	-	-
캐나다	-	-	-	-	-	-
멕시코	-	-	-	-	-	-
뉴질랜드	-	-	-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이스라엘	-	-	-	-	-	-
에스토니아	-	-	-	-	-	-
평 균			0.11			0.31

* 상속세·증여세 각각에 대한 수치가 없이 '계'만 표시된 것은 상속·증여세 별도 구분되지 않음

2.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 상속·증여세제의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측면과 저축·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국별로 큰 차이를 보임

-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 관련 세제를 다소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임
 - (미국) '13년 이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상 (35→40%)
 - (독일) '10년 형제·기타 등급의 상속·증여세율을 10% 인상
 - (일본) '13년 세율 인상 (6단계 50% → 8단계 55%)*
 - * '07년 세제조사회는 일본의 사회보장이 강화됨에 따라 노후부양에서 공적부담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상속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회복할 것을 권고

- 반대로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국제적 투자유치, 자영업자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목표로 상속세를 폐지·감경
 - 캐나다('72), 호주('84), 뉴질랜드('92), 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04), 스웨덴('05)은 상속세를 폐지
 - 상속세 폐지국가는 대부분 상속인의 유산 처분시 자본이득으로 과세(캐나다는 상속시점에서 자본이득 과세)
 - 대만은 '09년 10단계 누진세율(최고 50%) 과세체계를 단일세율제도로 전환

3. 중장기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가. 상속·증여세율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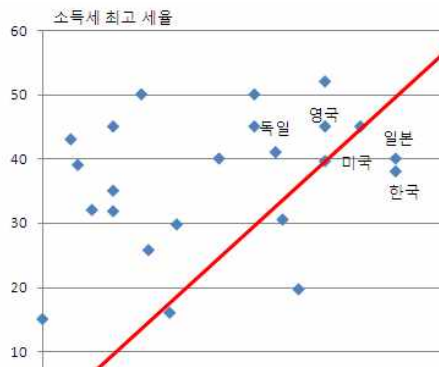
- 상속·증여세율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50%)으로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의 2배 수준
- '75년 이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인하 등 모두 6차례 세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하였으며 '97년 상속·증여세 이원체계를 통합 운용
- * '08년 개방경제에서 타국보다 높은 상속세율 유지시 국부의 해외유출로 인한 경제활력 저해 등이 우려되어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음

□ 외국과의 비교 및 평가

- 일본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최고세율 수준이며, 소득세와의 최고세율 비교에도 상대비중이 크게 나타남

<표 III-7> 주요국의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단위: %)



	상속세율	소득세율
한국	50	38
미국	40	39.6
영국	40	45
독일	30	45
일본	50	40

□ 또한, 세계적인 추세는 성장과 분배 중 분배 기능은 소득세제에 맡기고 성장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낮은 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든지 폐지하고 있음

□ 중장기 정책 방향

○ (1안) 현행 유지

- 상속세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소득세율 수준과 달리 불 필요
- 소득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는바, 부의 분배 수단으로서 상속·증여과세를 주요 정책으로 활용할 필요

○ (2안) 소득세율 수준 등을 고려한 세율 수준 합리화

- 피상속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대하여 다시 과세한다는 관점에서는 소득세율보다 낮아야 함
- “OECD 34개국 + 7개국”을 비교해보면, 소득세율보다 높게 과세하는 나라도 3개국(일본, 한국, 헝가리)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득세율보다 낮게 과세
 - 36개국(88%)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든지 아예 폐지하고 있고, 24개국(60%)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10% 이하로 과세하고 있음

<표 III-8> OECD 34개국 + 7개국의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상속세율>소득세율 : 3개국

- 일본(50%(15년 55%)>40%), 한국(50%>38%), 헝가리(18%>16%)
-

상속세율=소득세율 : 2개국

- 프랑스(45%), 미국(40%≒39.6%)
-

상속세율<소득세율: 18개국 + 3개국

○ 상속세율 10% 초과: 11개국 + 1개국

- 영국(40%<45%), 네덜란드(20%<52%), 스페인(34%<45%), 독일(30%<45%), 벨기에(30%<50%), 터키(10%<35%), 아일랜드(33%<41%), 칠레(25%<40%), 핀란드(19%<31.75%), 덴마크(15%<25%), 슬로베니아(14%<50%), 남아프리카 (20%<40%)

○ 상속세율 10% 이하: 7개국 + 2개국

- 그리스(10%<42%), 터키(10%<35%), 아이슬란드(10%<31.8%), 노르웨이(10%<25.75%), 폴란드(7%<32%), 이탈리아(4%<43%), 스위스(칸톤별<13.2%), 브라질(8%<27.5%), 대만(10%<40%)
-

상속세 폐지(또는 미시행) : 11개국 + 4개국

- 캐나다('72), 호주('79), 이스라엘('81), 뉴질랜드('92), 포르투갈('04), 슬로바키아('04), 멕시코('05), 스웨덴('05), 오스트리아('08), 체코('14), 에스토니아(미시행), 싱가포르('08), 인도('85), 러시아('06), 중국(미시행)
-

나. 공제제도

현황

(상속공제)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 물적공제로 운용

<표 III-9> 우리나라의 상속공제제도

구 분	항 목	공 제 내 용	한 도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법정지분 내 실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30억 한도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장애자공제	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
물적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재산의 100%	최대 500억원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5억원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20%	2억원
	재해손실공제	당해 손실가액	-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가액 × 40%	5억원

* 선택 ①기초공제+②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
 ③일괄공제(5억원)

- (증여공제) 인적공제를 중심으로 10년 합산하여 공제금액 산정
 - 창업·가업승계 등 목적의 사전증여와 관련된 특례를 인정하여 생전 증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13년에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일부 인상(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10년간 3,000만원 → 5,000만원)

<표 Ⅲ-10> 우리나라의 증여공제제도

구분	항 목	공 제 내 용	비 고
증여 재산 공제	배우자 공제	6억원	10년간 공제금액임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2,000만원)	
	직계존속 공제	3천만원	
	기타 친족 공제	500만원	
	재해손실공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기타	창업자금 증여	5억원 공제 후 30억원 한도로 10% 특례세율 적용	상속시 정산
	가업상속 증여		

□ 외국과의 비교 및 평가

- (공제수준 비교)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점은 약 10억원(배우자 포함) 수준으로 주요국과 비교시 평균 수준으로 운용
 - 미국의 통합한도는 평생합산체제로 증여공제와 통산하므로 단순 비교 어려움
 - 처가 있고 자식이 1명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시 공제금액은 미국 > 일본 > 독일 > 우리나라 > 영국 순서임

〈표 III-11〉 주요국의 상속공제제도

구분	국가	면세점	1인당 GDP 배수	주요 공제
상속공제	한국	10억원	39.3	· 일괄공제(5억원) ·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미국	5,340,000\$ (55억원)	101.5	· 통합한도(증여포함, USD 5,340,000) · 배우자공제(한도없음)
	영국	325,000 £ (5.6억원)	13.2	· 325,000 £까지는 0% · 배우자공제(전액) · 매년 3,000 £ 증여액은 상속시 미포함
	독일	1,207,000 € (17억원)	36.5	· 배우자공제(€ 755,000) · 자녀공제(€ 452,000)
	일본	2.3억 ¥ (23억원)	56.6	· 기초공제(최소 5천만 ¥) · 상속인당 1천만 ¥ · 배우자공제(최소 1.6억 ¥)

□ 증여공제의 경우 최대 6.5억원(배우자, 자녀1인 가정시)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공제와 비교시 다소 제한적

<표 III-12> 주요국의 증여공제제도

구분	국가	면세점	1인당 GDP 배수	주요 공제
증여공제	한국 (10년 합산)	6.5억원	26.5	· 배우자공제(6억원) ·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국 (평생 합산)	5,340,000\$ (55억원)	101.5	· 통합한도(증여포함, USD 5,340,000) · 배우자공제(한도 없음) · 기초공제(수증인 1인당 USD 13,000)
	독일 (10년 합산)	900,000 € (12억원)	36.5	· 배우자공제(€ 500,000) · 자녀공제(€ 400,000)
	일본 (1년 합산)	110만 ¥ (1,100만원)	0.3	· 기초공제(110만 ¥)

□ 평가

- ① 증여시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인정되는바, 이는 상속시 일괄공제금액 5억원의 10%에 불과하여 사전증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다만, 증여는 10년간 합산하므로 10년마다 증여를 반복하면 증여세의 “누진구조”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발생 가능성 있음
- ② 상속시 공제제도의 문제점은 다양한 인적공제제도가 있으나, 일괄공제 5억원으로 인하여 사실상 혜택이 없음
 - 자녀공제(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500만원 × 20세까지 잔여년수), 연로자공제(1인당 3,000만원)가 있으나, 기초공제(2억원)와 합하더라도 일괄공제(5억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적용되는 일이 거의 없음

③ 공제금액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인원 상승세

- 상속세 과세자 비율 : ('00년) 0.7% → ('12년) 2.2%

□ 중장기 정책 방향

□ 증여와 상속 간 세부담 중립성 유지

- 상속세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세금으로,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기 위한 세목이므로 합산하여 Lifetime transfer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
- 다만, 증여에 대한 현행 10년 합산 체계가 아닌 평생 합산 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행정집행 비용 등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

□ 상속·증여 공제 수준 합리화

- 물가상승, 상속시 인적공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개별 공제에 대한 공제 수준을 합리화할 필요

참고문헌

- 김신언,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연구」, 『조세법연구』 17-2, 2012.
- 김진, 『자산이전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 12.
- 김진 · 송은주 · 정희선, 『주요국의 기업상속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8.
- 원종학, 『주요국의 상속 · 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동향』, 한국조세연구원, 2012. 12.
- 채현석 · 박훈, 「개인간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 『세무학연구』 제24권 제3호, 2007. 9
- 최명근,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2. 4.
- J Mirrlees, “Tax by Design : The Mirrlees Review”, Oxford University Press, September 2011.
- www.ibfd.org, Online Books, IFA Cahiers 2010 - Volume 95B. Death as a taxable event and its international ramifications, 2010.